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2. 15 선고 2022가단376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2. 15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1) 125,519,589원 및 이에 대한 2019. 8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법원은 소장 · 준비서면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,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117조, 제124조 본문).

이 법원은 2022. 10. 12.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대하여 8,400,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, 위 결정 정본은 2022. 10. 18. 원고 A에게, 2022. 11. 8. 원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원고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건희

1) ‘원고들에게’ 부분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설행한다.